##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55

발의연월일: 2025. 4. 3.

발 의 자:김동아·허성무·박균택

서삼석 • 한준호 • 이병진

임호선 · 홍기원 · 김남근

오세희 • 전현희 • 정을호

문정복 • 박정현 • 정진욱

전재수 • 이재관 • 김성환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 등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인근수요처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발전방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에너지 활용률이 높음. 또 산업공정폐열, 쓰레기 소각열 같은 미활용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이유 등으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아울러, 대규모 송전선로 확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부지 내에 안정적으로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가주목을 받고 있음.

해외의 경우 현재 EU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저감·송전망 혼잡 완화 등 경제적 편익을 인정하고 집단에너지에 대한 보급 및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

국내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지난 1991년이 제정돼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 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 고,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 용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 중형 전력시장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분산자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실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 법률 제 호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금의 확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와 비용지원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	
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	
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	
게 필요한 자금 등을 <u>지원할</u>	지원하
<u>수 있다</u> .	<u>여야 한다</u>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8조의2(자금의 확보) ① 산업통
	<u>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u>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담한
	<u>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와 비용지원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